2020년 본청 특정감사 결과 공개

○ 2020년 본청 특정감사 결과를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합니다.

Ⅰ 감사 개요

□ **(감사기간)** 2020. 5. 11(월) ~ 5. 29.(금) / 15일간

□ **(감사범위)** 2019년 1월 이후

□ **(감사대상)** 본청 23개 부서/ 의회사무과 제외

□ **(감사사항)** 기간제근로자 채용, 국내출장 및 여비, 특별회계

□ **(감 사 단)** 감사평가팀장 등 4명

□ **(중점감사사항)**

구 분	중점감사사항
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	▸ 채용시 절차 준수 및 구비서류 확인여부, 서류 및 면접심사 적정성
국내출장 및 여비	▸ 4시간 이상 출장명령 후 미출장 및 4시간미만 출장여부
특별회계	▸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적정성

□ **감사처분 실무협의회 개최**

○ **(일시/참석)** 2020. 6. 29(월) 16:30 ~ 17:00 / 감사평가실장 등 8명

○ **(안 건)** 감사결과 처분요구(안)에 대한 심의

○ **(개최결과)** 원안 가결(붙임3 심의조서)

○ **(처리방향)** 지적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방향 설정을 위해 감사처분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되, 문책보다는 개선에 중점

Ⅱ 감사 총평

○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」제3조(적용범위) 및「2020년도 특정 감사계획」에 따라 23개 부서의 3개 감사사항에 대하여 2020. 5. 11일부터 5. 29일까지(15일간)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.

○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야는 ´20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복무점검이 있어 이번 특정감사 시, 전수에 대하여 점검하였음.

- 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(사업체 조사 등 60개 사업, 626명)시 절차 준수 여부, 응시자 구비서류 확인 여부, 서류 및 면접심사 적정성을 확인하였음.
- 전반적으로 채용과정이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으나, ㅇㅇㅇㅇㅇ에서는 서류심사 부적정, 채용후보자에 대한 건강상태 미확인, 동점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, 복무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였음.

○ 국내 출장분야는 외부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출장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(´19. 7.)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.

- 2019년 8월 ~ 2020년 1월까지 4시간 이상 출장명령 후 미출장 및 4시간 미만 출장에 대하여 점검하였음.
- 22개 부서에 대하여 4시간 이상 출장명령 후, 조기복귀 및 복귀 후 재출장건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 304명, 16,360천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예정.

○ 특별회계분야는 외부감사에서 빈번하게 지적 대상이 되고 있어 5개 특별회계의 2019년 예산운영,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음.

-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, 준공검사 기간 미준수 및 건설공사 원가계산 검토를 소홀한 사실이 확인되었음.

○ 앞으로는

- 기간제근로자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한 관리규정 개정 및 채용심사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것임.
- 국내출장 분야는 출장시작 및 종료시 시스템 입력 철저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.감독이 필요한 사항임.
-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규정준수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

Ⅲ 감사 결과

□ 총괄

구분	계	행정상(건)			재정상 (명/천원)	신분상(명)		
		계	주의	개선	회수	계	훈계	주의
계	312	4	3	1	305/16,863	3	2	1
기간제근로자	5	2	1	1	-	3	2	1
국내출장	304	-	-	-	304/16,360	-	-	-
특별회계	3	2	2	-	1/503	-	-	-

□ 분야별 처분내역

연번	부 서	제 목	처분 지시		
			행정상	재정상	신분상
	합 계		4	305	3
1	○ ○ ○	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	1(개선)	-	-
2	○ ○ ○ ○ ○	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	1(주의)	-	2(훈계) 1(주의)
3	○○○○○ 등 22개 부서	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	-	304(회수)	-
4	○ ○ ○ ○ ○	준공검사기간 미준수	1(주의)	-	-
5	○ ○ ○ ○ ○	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소홀	1(주의)	1(회수)	-

[일련번호 : 1]

특정감사 처분

행정상 개선

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

부 서 명 ○○○

내 용

○ 「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」 권고안을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, 중앙행정기관, 광역·기초 지방자치단체, 시·도 교육청의 장에게 제도개선 권고(2019-552호, 2019. 12. 2 의결)

○ 권고안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시 최소 공고기간(5일 이상)을 설정, 채용공고 생략 규정을 2020. 6. 30일까지 정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

○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·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위한 채용 공고 규정을 신설하여야 함

□ **국무조정실 권고 관련 규정 미개정 현황**

과제 제목	담당부서	개정 대상
근로자 채용 시 최소 공고기간의 설정 및 채용공고 생략규정	○○○	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9조

조치할 사항 ○○○장은

○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대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공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행정상 : 개선 / 재정상 : 없음 / 신분상 : 없음

[일련번호 : 2]

특정감사 처분

행정상 주의
신분상 훈계, 주의

제　　목　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

부 서 명　ㅇㅇㅇㅇㅇ

내　　용

1. 채용 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

○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,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ㅇㅇㅇㅇㅇ에서는 2019년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선발 및 활용계획에 따라 대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상·하반기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을 게시하여 숲길유지관리원 등 5개 사업 기간제근로자 14명(상반기 9명, 하반기 5명)을 선발하였음.

○ 위 모집 공고안에 따르면 신체 건강한 자로 되어 있고, 신청 자격의 제한은 심신허약자, 심혈관계 질환 등 지병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그러나, 최종합격자 14명 중 11명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지 않아 채용 후보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음.

2. 채용시 서류심사 부적정

○ ○○○○○○에서는 2018년 12월에 2019년 대청공원·상수원보호 관리분야(연번 2, 10) 기간제근로자 22명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중 2명에게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함으로써, 불합격 대상임에도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었음.

- 지원자 ○○○의 건강진단서에 “양측 전체 폐에 간질성 폐질환/간기능 이상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신체조건 능력점수(0~10점)를 20점 부여, 총점 67점으로 대청공원 근로자 커트라인(63점)을 상회하여 합격 처리
- 지원자 ○○○의 공원녹지분야 종사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하여 20점을 부여하여야 하나, 30점을 부여하여 총 75점으로 상수원보호 근로자 커트라인(74점)을 상회하여 합격 처리

○ 또한, 2019년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분야 기간제근로자 선발 및 활용계획에 따라 모집 공고시 지원자들은 참여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기타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차량등록증 등)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, 합격자 중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- 채용시 증빙서류 미제출(27) : 경력확인서(26), 기동력 확인서류(1)

3.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소홀

○ 2019년 대청공원 관리분야(연번 2)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○○○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병원진료 14회(호흡기내과 3회, 정형외과 11회)를 복무처리 없이 정상근무 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.

- ○○○○○○ 호흡기내과 3회(4.9, 4.23, 7.23), ○○○○의원 11회(9.26, 9.27, 9.30, 10.4, 10.8, 10.10, 10.11, 10.14, 10.15, 10.16, 10.18) 병원 진료

4. 채용심사시 동점자 처리기준 부재

❍ ○○○○○○에서는 2019년 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선발 및 운영계획에 따라 대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을 게시하여 가로수 관리 등 4개 사업 기간제근로자 19명을 선발하였음.

❍ 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심사표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, 동점자 발생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.
우선 순위 중 1순위는 유사분야 경력자, 2순위는 신체 건강한자, 3순위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음.
그런데, 가로수 관리사업 및 녹지대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각 항목별 동점자가 발생하였음에도 2순위인 연소자순으로 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.

[표1]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및 주요지적사항

연번	사업명	채용인원	주요 지적사항	비고
합계	17개 사업	128		
1	공원관리운영	19	○경력확인서 미제출	○○○○○ 복무 점검
2	대청공원유지관리	12	○서류평가 점수 배점오류로 합격자 변경(1) ○복무관리 소홀 / 병원진료(14회) 정상근무 처리	〃
3	도시공원녹지안전관리	8	○경력확인서 미제출	〃
4	동춘당주변유지관리	5	○경력확인서 미제출(3), 기동력 확인서류 미제출(1)	〃
5	산불전문예방진화대(봄)	20	○신체검사서 미제출(11), ○채용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 - 검사서상 이상 소견 확인없이 채용(4)	〃
6	산불전문예방진화대(가을)	12	○신체검사서 미제출(6) ○채용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 - 검사서상 이상 소견 확인없이 채용(3)	〃
7	산불전문예방진화대(가을)	6	○신체검사서 미제출(5)	〃
8	숲가꾸기패트롤(1차)	3	○신체검사서 미제출(2) ○채용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 - 검사서상 이상 소견 확인없이 채용(3)	〃
9	숲가꾸기패트롤(2차)	5		
10	상수원보호구역유지관리	10	○서류평가 점수 배점오류로 합격자 변경(1)	〃

11	가로수관리	8	ㅇ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가 유사분야 경력자순이나 연소자순으로 선발 - 동점자 중 유사경력 기간 : ㅇㅇㅇ(8개월), ㅇㅇㅇ(5개월), ㅇㅇㅇ(9개월) - 동점자 3명 중 1명 선발 : ㅇㅇㅇ	특정감사
12	녹지대정비(6)	6	ㅇ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가 유사분야 경력자순이나 연소자순으로 선발(녹지대정비) - 동점자 중 유사경력 기간 : ㅇㅇㅇ(65개월), ㅇㅇㅇ(27개월), ㅇㅇㅇ(49개월), ㅇㅇㅇ(40개월) - 동점자 4명 중 3명 선발 : ㅇㅇㅇ, ㅇㅇㅇ, ㅇㅇㅇ	〃
13	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	2	ㅇ채용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 - 합격자 신체검사서 미확인(2명)	〃
14	산사태현장예방단	4	ㅇ채용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 - 합격자 신체검사서 미확인(3명)	〃
15	숲길유지관리원	4	ㅇ채용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 - 합격자 신체검사서 미확인(3명)	〃
16	이동단속요원	3	ㅇ채용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 - 합격자 신체검사서 미확인(2명)	〃
17	임도관리원	1	ㅇ채용후보자 건강상태 확인 소홀 - 합격자 신체검사서 미확인(1명)	〃

조치할 사항 ㅇㅇㅇㅇㅇ장은

❍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정확한 서류 심사 및 동점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, 합격자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,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❍ 행정상 : 주의 / 재정상 : 없음 / 신분상 : 훈계(2), 주의(1)

[일련번호 : 3]

특정감사 처분

재정상 회수

제　　목　관내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

부 서 명　ㅇㅇㅇㅇㅇ등 22개부서

내　　용

○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.

○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제18조 제1항에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,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

○ 그런데 ㅇㅇㅇㅇㅇ등 22개 부서에서는 4시간 이상 출장명령 후 미출장 및 4시간 미만 출장에 대하여 2만원을 지급하는 등 304명, 16,360,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.

조치할 사항　ㅇㅇㅇㅇㅇ장 등 22개 부서장은

○ 과다 지급한 여비 16,360,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행정상 : 없음 / 재정상 : 회수 / 신분상 : 없음

[일련번호 : 4]

특정감사 처분

행정상 주의

제 목 준공검사 지연 등 공사감독업무 소홀

부 서 명 ○○○○○

내 용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감독)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같은 법 제17조(검사) 및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」 제123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○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27조(검사)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준공신고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, 설계서,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
○ ㅇㅇㅇㅇㅇ(現 ㅇㅇㅇㅇㅇ)에서는 ㅇㅇㅇ(ㅇㅇ통) ㅇㅇㅇㅇ 및 ㅇㅇ 확포장공사 외 1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준공일 준공검사 기한인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, 특별한 사유 없이 각각 3일, 12일을 지연해서 실시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□ **준공검사 지연 현황**

구분	연도	사 업 명	계약금액(천 원)	계약자	사업기간	준공검사기간	준공검사일
1	2019	ㅇㅇㅇ(ㅇㅇ)ㅇㅇㅇㅇ 및 ㅇㅇ 확포장공사	15,196	㈜ㅇㅇㅇㅇ	'19.6.18~8.16	'19.8.17~8.30	'19. 9. 2 (3일 지연)
2	2019	ㅇㅇㅇ(ㅇㅇ)ㅇㅇㅇㅇ 환경개선공사	7,260	㈜ㅇㅇㅇ	'19.6.24~7.18	'19.7.19~8.1	'19. 8. 13 (12일 지연)

조치할 사항 ㅇㅇㅇㅇㅇ장은

○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를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행정상: 주의 / 재정상: 없음 / 신분상: 없음

[일련번호 : 5]

특정감사 처분

행정상 주의
재정상 회수

제 목 건설공사 원가계산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검토 소홀

부 서 명 ○○○○○

내 용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0조,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) 제7조, 제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(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)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,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,

○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1.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
(고용노동부 고시 2018-94호)

○ ○○○○○○에서는 ○○○○(○○○)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므로 안전관리비를 설계내역에 계상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상하여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원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총 503,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지급 현황

사 업 명	계약자	사업기간	공사비(원)			부당지급 금액(원)	비고
			총공사비	도급액	관급액		
○○○(○○) 하천정비공사	㈜○○○○	'19.11.19 ~12.16	21,135,000	19,729,000	1,406,000	503,000	미정산 (회수)

조치할 사항 ○○○○○장은

○ 부적절하게 지급된 안전관리비 503,000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,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가계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행정상 : 주의 / 재정상 : 회수 / 신분상 : 없음